

##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4.04.15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성인학습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운영)** 성인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별 특성, 심리적 특성,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한다.

**제3조(조직)** ①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직제규정에 따라 임명한다.

③ 센터에는 교원, 직원, 연구(보조)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성인학습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
2.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
3. 성인학습자 입학자원 발굴 및 홍보
4.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운영지원
5. 기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5조(위원회)** ①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인학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6조(환류)** 센터에서는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 및 사업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다음 학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